

「202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」 공고

경상북도에서는 신혼부부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신청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0. 12. .

경 상 북 도 지 사

1. 사업개요

- 사 업 명 : 202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사업
- 사업목적 : 신혼부부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삶의 질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함
- 융자지원 조건
 - 융자취급은행 : 농협은행, 대구은행
 - 융자최대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- 융자용도 : 임차보증금(전세 보증금)

2. 신청자격

□ 신청대상자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
- 신청 시 부부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
본 사업 대출실행 후 1개월 이내 도내로 전입예정인 신혼부부
-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추천서 신청일로부터
3개월 이내 결혼예정인 예비신혼부부
-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자
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(변경조항)
-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-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
□ 대상주택 : 경기도 관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

-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등 주택이 아닌곳을 지원불가
- 공공주택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가*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은 지원불가(신설조항)

* 공공주택사업자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
2. 「한국토지주택공사법」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
3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
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
3. 대출안내

□ 대출신청시기

- 신규임차 : 임대차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
- 계약갱신 :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
□ 대출한도

- 최대 2억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 - ※ 단,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연소득 등에 의한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 이내이므로 협약은행(농협, 대구은행)에서 사전상담 필요

□ 대출금리 : ① 기준금리+ ② 가산금리

① 기준금리(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) ② 가산금리

- ※ COFIX금리 : 8개 시중 주요은행의 자금조달비용 금리를 반영한 대출기준금리

□ 보증방식

-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이용
(* 보증 신청에 따른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)

□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 (최저 0%)

- ※ 본인부담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리 적용
-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2.0% 이하

부부합산 연소득 구간	지원금리
5천만원 이하	2.0%
5천만원 초과 ~ 7천만원 이하	1.5%
7천만원 초과 ~ 9천만원 이하	1.0%

- 추가 이자지원금리 : 최대 연 1.0% 이하(1자녀 0.5%, 2자녀 1.0%)

※ 태아 포함(임신증명서 제출)

※ 추천서 발급기준 만 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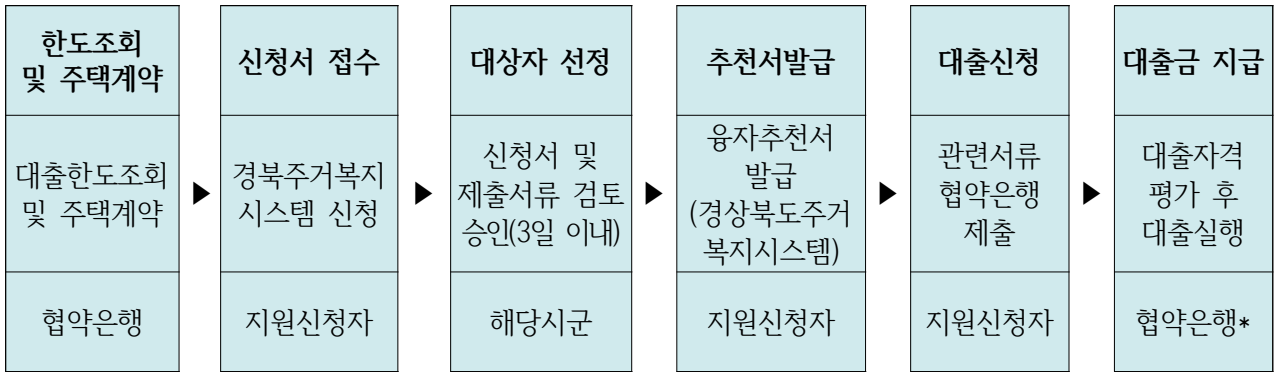
- 이자지원기간 : **최장 6년 이내**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 - 기본지원은 **2년**
 - 자녀수 에 따라 **최장 4년(2년씩 2회)**이내 연장지원 가능
 - ※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되며 추천서 발급기준 만7세 이하의 자녀만 해당
 - 이자지원 중단사유
 - 1) 결혼예정자 혼인사실 확인서류 미제출
 - 2) 도내 전입예정자 1개월 이내 전입사실 확인서류 미제출
 - 3) 경상북도 외 지역으로 전출(은행에서 물건지 변경등록 필수)
 - 4) 임대차계약 종료(대출금 상환)
 - ※ 신청자는 중단사유 발생 시 지체없이 대출은행에 통보하여야 하며, 미통보 및 통보지연 시 이자지원금 회수 및 연체이자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- 본인 부담금리 : 대출금리 - 이자지원금리 = 일부담금리

4. 신청안내

- 신청접수 : 2021. 1. 1부터 상시접수
- 접수방법 : 경상북도 주거복지시스템(www.gbhome.kr)
- 문 의 처 : 대출문의 - 협약은행 콜센터
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 여부, 소득조건 등)
홈페이지 이용 문의 -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 (☎ 054-880-4014)
(홈페이지 오류, 신청서 변경 및 취소 등)
- 신청서류 ※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(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)
 - ① 주민등록등본 1부 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 - ② 가족관계증명서 1부
 - ③ 혼인관계증명서 1부 (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등)
 - ④ 임대차계약서[계약금(보증금의 5% 이상) 지급 영수증 포함] 1부
 - ※ 정부, 공공기관 주거(비)지원(대출포함)을 받는 자 제외
 - ※ 대출심사 시, 협약은행에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

□ 신청 및 대출절차

※ 협약은행 : 농협, 대구은행



5. 기타사항

- 제출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기재내용이 협약은행에 제출된 서류와 상이하여 용자지원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될 수 있으며, 향후 재신청이 불가능 합니다.
- 용자 추천을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기타 사항은 협약은행 콜센터 또는 경상북도 건축디자인과(☎054-880-4011, 401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- 붙 임 :** 1.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용자지원사업 FAQ.
2. 협약은행 대출신청 시 필요서류 안내문.